

企業經營과 税金講話 7

企業經營의 合理과 效能을 爲해 알
기 爲기 엮어 가는 税金特講을 連
載한다.

- 相續稅란 무엇인가?
- 納稅義務者란?
- 贈與稅란 무엇인가?
- 課稅財産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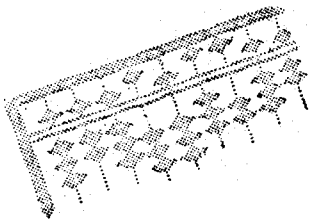
李 文 宰
慶熙大 經營行政大學院 教授

第 7 講 相續稅와 贈與稅 (3)

VI. 稅 率

相續稅의 稅率은 다음과 같은 多段階 超過累進 稅率을 適用한다.

(課稅價額)	(稅率)
20萬圓 以下의 金額	5%
20萬圓을 超過하는 金額	10%
50萬圓 " "	15%
200萬圓 " "	20%
500萬圓 " "	30%
1,000萬圓 " "	40%
3,000萬圓 " "	50%
1億圓 " "	60%
5億圓 " "	70%



Ⅰ. 申告와 納付

1. 申告

相続人 또는 受遺者は 相続開始를 한 날로부터 3월以内에 相続稅를 賦課할 相続財産의 種類, 數額, 價額, 財産價額에 加算한 贈與의 價額 그리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 書面과 相続財産目録 및 相続財産價額中에서 控除할 金額의 明細書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共同相続인 경우에는 그 中 1人이 提出하면 되고 他相続人은 提出을 아니한다.

- (1) 被相続人의 姓名과 死亡當時의 住所
- (2) 相続開始의 原因
- (3) 相続開始의 日
- (4) 相続財産의 價額에 加算할 贈與財産이 있을 경우에는 그 財産의 所在, 價額, 受遺者의 住所와 姓名

(5) 財産相続中 遺頼財産이 있을 경우에는 그 財産의 住所, 價額, 受遺者의 住所와 姓名.

- (6) 共同相続의 경우에는 各自의 相続分 明細
- (7) 相続人의 住所와 姓名
- (8) 相続人と 被相続人과의 親族關係

위와같은 書類를 提出할 경우에 相続人이 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 第1号 내지 第6号의 事項과 相続人이 確定되지 아니하는 事由를 記載하여야 하고 그 後에 相続人이 確定된 때에는 相続人, 遺言執行者 또는 相続財産 管理人은 遲滯없이 第7條와 第8條의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 하여야 한다.

그리고 遺言執行者 또는 相続財産 管理人에 있어서는 취직 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3月以内에 被相続人 또는 相続人이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6月以内에 提出하게 되어 있다.

이밖에 또한 納稅義務者가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지 아니한 때에는 申告書類의 提出과 納稅 기타 相続稅에 관한 一切의 事項을 處理하기 위해서 納稅 管理人을 定하여 申告하여야 하며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移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納付

法定 期限內에 申告書를 提出하는 者는 그 申告 價額에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自己算出稅額에서 10%를 控除한 金額을 納付할 수 있다.

그러나 後述하는 年賦延納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같은 控除의 特典은 第1회에 納付하는 金額에만 適用 한다.

① 延納

相続稅는 原則的으로 一時에 納付하여야 하나 稅額이 100萬圓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額에 대하여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3年以内의 年賦 延納을 請求 할 수도 있다.

年賦延納을 請求코자 할 때에는 課稅決定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納稅義務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때에는 3月內) 擔保의 種類 및 延納의 期間을 記載한 申請書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면 된다.

年賦延納의 金額은 延納期間에 平分하여 定하며 擔保의 種類는 다음의 것에 限한다.

- (1) 稅務署長이 確實하다고 認定하는 有價 証券
- (2) 土地
- (3) 建物

有價証券을 擔保로 提出할 때는 이를 供託하고 供託受領証을 提出하여야 하며 土地建物を 擔保로 提供할 때에는 稅務署長이 抵當權의 登記를 하게 되어 있다.

擔保物의 擔保價額은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稅務署長이 이를 定하며 擔保物의 價額에 減少가 있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다시 相當分의 增擔保를 提供케 할 수 있고 增擔保를 提供하여야 함에도 提供하지 아니할 때에는 年賦延納의 許可를 取消하고 一時에 相續稅를 徵收한다.

年賦延納을 한 者가 滯納을 한 때에는 擔保物을 公賣하여 稅金과 公賣費用에 充當하고 不足이 있을 때에는 追徵하며 殘余金이 있을 때에는 還付한다.

2. 延納과 利子計算

年賦 延納에 대하여는 第2回 以後에 納付할 分

納稅額을 納付할 때 다음과 같이 日數에 따라 日辺 5錢의 比率로 算出한 金額, 곧 利子額을 合算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1) 그 回의 分納稅額을 基礎로 하여 前回의 分納稅額의 納付期限의 翌日로부터 그 回의 分納稅額 納付日까지의 日數에 대하여 計算한 利子稅額

(2) 年賦延納 稅額의 總額에서 그 回까지의 分納稅額의 合計額을 控除한 稅額을 基礎로 하여 前回의 分納稅額의 納付期限 翌日로부터 그 回의 分納稅額의 納期限 까지의 日數에 대하여 計算한 利子稅額.

③ 物納

相續財産中 不動産과 有價証券의 價額이 全體의 半을 초과하는 相續稅額이 60萬圓 以上이 되는 경우에는 物納도 請求할 수 있다.

物納의 請求는 課稅價格決定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納稅義務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때에는 3月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物納을 請求할 수 있는 相續稅額은 當해 財産인 不動産 및 有價証券의 價額에 對한 相續稅額을 초과할 수 없으며 相續財産인 不動産 및 有價証券中 이와같은 相續稅額을 納付하는데 適合한 價額의 物件이 없을 때에는 稅務署長은 이와같은 規定에도 不拘하고 當該稅額을 초과하는 相續稅額에 對해서도 物納을 許可할 수 있다.

物納에 充當할 수 있는 不動産 및 有價証券은 相續財産에 評價된 것으로서 國內에 所在하는 不動産과 國債, 公債, 地價証券 및 稅務署長이 適合하다고 認定하는 有價証券에 限한다.

또한 物納의 取納價額은 相續開始當時의 現況에 의하며 管理處分上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稅務署長은 物納의 變을 命하거나 許可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課稅價格의 決定

相續稅의 課稅標準인 課稅價格은 原則적으로 申告에 의하여 決定한다. 그러나 申告가 없거나 申告內容이 不當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稅務署長이 決定한다.

稅務署長은 決定된 課稅價格을 納稅義務者에게 通知하게 되어 있으며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納稅義務者가 納稅管理인의 申告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通知는 公告로서 할 수 있다.

贈與稅 篇

既述한바 있거니와 贈與稅는 生前에 있어서 財産의 贈與가 있는 경우에 그 贈與를 받은 者에게 贈與를 받은 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課稅한다.

I. 納稅義務者

다음 경우의 贈與를 받은 者는 贈與稅를 納付한 義務가 있다.

(1) 國內에 住所를 둔 者가 他人으로 부터 贈與를 받았을 때

(2)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가 國內에 있는 財産에 對하여 贈與를 받았을 때

그리고 贈與稅의 納稅地는 受贈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를 管轄하는 稅務署로 하며 受贈者가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受贈者의 住所나 居所가 不分明한 때, 또는 受贈者가 納稅資力을 喪失하여 納稅가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贈與者의 住所地나 居所地를 管轄하는 稅務署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알아 둘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贈與를 한 者도 贈與稅의 連帶納付의 責任을 지게 된다는 點이다.

(1) 受贈者가 國內에 住所나 居所를 두지 아니한 때

(2) 受贈者의 住所나 居所가 不分明한 때

(3) 受贈者가 贈與稅의 課稅價額을 決定하기 前에 受贈財産을 處分하였거나 기타 事由로 인하여 納稅資力이 喪失되었다고 認定된 때

(4) 受贈者가 贈與稅를 滯納하였을 때

II. 課稅標準과 控除

1. 課稅標準

贈與稅는 贈與를 받은 當時의 受贈財産의 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곧 贈與를 받은 時點의 時價額이라는 것이며 時價의 評價方法은 相續稅의 課稅價格方法에 準하게 되어 있다.

2. 控除

家族間 또는 親族間의 贈與에 대해서는 다음 金額을 課稅額에서 控除한다.

- (1)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으로부터의 贈與에 대하여는 150만원
- (2) 이밖의 親族으로부터의 贈與에 대하여는 100만원.

여기에서 말하는 親族은 民法上의 親族범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父系 8寸 母系 6寸內가 된다.

3. 免稅點

贈與稅는 그 課稅額이 10만원 未滿인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配偶者나 直系尊卑屬으로부터 160만원의 贈與를 받았다고 한다면 基礎控除로서 1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10만원이기 때문에 課稅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3年内 再贈與의 경우

家族 或은 親族間의 贈與에 있어서 當該 贈與前 3年以內에 同一人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價額이 200만원 以上の 것이 있을 때에는 그 贈與의 價額을 加算하여 所定의 基礎를 한다. 이 경우에 既往에 納付한 贈與稅는 이를 공제한다.

Ⅲ. 看做 贈與

1. 信託의 受益權

信託으로 인하여 委託者가 他人에게 信託의 利益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을 權利를 所有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계기한 때에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를 贈與한 것으로 看做한다.

- (1) 元本의 利益을 받을 權利를 所有하게 한 때에는 受益者가 그 元本을 받을 때, 다만 數回에 分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最初의 그 一部를 받을 때
- (2) 受益의 利益을 받을 權利를 所有하게 한 때에는 受益者가 그 受益을 받을 때, 다만 數回에 分하

여 받을 때에는 最初의 그 一部를 받을 때

이와같은 경우에 受益者가 特定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存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을 受益者로 看做하고 受益者가 特定되거나 또는 存在하게 된 때에는 새로이 信託이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또한 元本 또는 受益의 受益者가 元本 또는 受益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게 될 때 까지는 元本 또는 受益의 利益을 받을 權利를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이 所有한 것으로 看做한다.

2. 生命保險金

生命保險契約으로서 保險金受取人이 保險契約者 以外的 者인 경우에는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에 保險料拂入者는 保險金相當額을 保險金受取人에게 贈與한 것으로 본다. 다만 保險金額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部分에 대해서만 贈與로 본다.

그러나 그 保險金이 相續財產으로 看做되었을 때에는 이를 除外하여 相續財產으로 하며 拂入한 保險料中 一部를 保險金受取人이 拂入하였을 때에는 保險金額에서 拂入한 保險料總合計額中 保險金受取人 以外的 者가 拂入한 保險料額의 占有比率에 相當하는 金額만을 贈與한 것으로 본다.

3. 低價讓受

顯著히 低廉한 對價로서 財產을 特殊關係있는 者에게 讓渡하였을 경우에는 그 財產을 讓渡한 때에 있어서 財產의 讓渡者가 그 對價가 時價와의 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讓受人인 特殊關係있는 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看做한다. 다만 그 讓受人이 資力을 喪失하여 納稅할 能力이 없을 때에는 一部 또는 全部를 免除한다.

여기에서 時價라 함은 相續財產의 評價方法에 따른 財產의 評價額을 말한다.

그리고 特殊關係있는 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讓渡者의 配偶者(事實婚關係包含)와 그 配偶者의 親族
 - (2) 讓渡者의 親族, 親族의 配偶者와 그의 4寸以內的 親族
- (계속)